

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

▶ 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발췌 (2015. 05. 14)

▣ (발생상황)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'14년 9월 24일부터 금일까지 9개 시·도, 32개 시·군에서 154건이 발생했으며, 217농장 492만수를 살처분* 하였다고 밝혔다.

* '14.1.16~7.24일 : 11개 시·도, 41개 시·군, 212건 발생, 548호 1,391만수 살처분

○ 4월 29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미 검출된 이후, 5.12일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장상시 예방 검사에서 검출되는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

○ '14년 9월 24일 이후, 전국적으로 52개 방역대가 설정되었으며, 이 중 4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, 6개가 유지*되고 있으며, 4개 방역대는 5월말, 나머지 2개 방역대는 6월초 및 6월말에 각각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경기 안성 1개, 포천 2개, 전북 김제 1개, 정읍 1개, 전남 1개

◇ (참고) 미국 AI 발생상황

▶ '14년도 이후, 해외 총 3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1,389건 발생하였고, 미국은 지난해 12월 오리견주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, 금년 5.12일까지 20개 주에서 216건 발생하였으며, 약 3천2백만수를 살처분 하였고, 3개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

▣ (방역대책)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조기 색출을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발생농가에 대한 입식 전 검사를 지자체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전실 설치, 소독설비 설치, 매몰지 확보 여부 등 농장 방역실태가 양호한 농가에 한해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.

○ 특히, 오리농장은 4월부터 입식 전, 폐사체, 출하 전 검사(3단계)를 통해 AI 오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하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.

○ 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연, 이동제한 기간중 불법입식, 살처분 명령 불이행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24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, 과태료 부과, 살처분 보상금 감액,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을 조치하였다.

○ 앞으로도 지자체, 검역본부, 농식품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금류 농가, 도계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
▣ (방역체계 개선) AI도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간 수립된 'AI 방역체계 개선방안

(‘14.8월)을 조기 정착시키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향후 추진일정은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관(단체)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7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.

▣ (가축전염병예방방법을 개정 추진)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,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「가축전염병 예방방법」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* 동 개정안은 '1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병원성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, 정부에서 발의하여 개정 추진

— < 주요 개정내용 > —

- ◇ 철새군집지 등 위험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·운영(안 제3조의4)
 - * 방역관리지구는 일반지역에 비해 검사·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함
- ◇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고,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부여(안 제6조의2)
- ◇ 적정 방역관 확보 및 소독설비 설치대상 확대(안 제7조 및 제17조)
 - * 소독설비 : (기존) 300㎡ 초과 가축사육시설 → (개정) 50㎡ 초과 가축사육시설
- ◇ 가축거래기록 작성·보존제도 보완(안 제16조)
 - * 가축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도 작성·보존토록 하고, 작성대상에 식용란(食用卵) 추가

- ◇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(안 제17조의6)
- ◇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및 경감 규정 마련(안 제48조)
 - * 축산법 상 미등록·미허가, 적정 사육기준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방역조치 우수농가는 보상금 감액 시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

- ▣ 개정 법률안은 금년 4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·의결을 거쳐 5월 6일자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며,
 -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.

붙임

미국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정책

- ▣ (발생 현황) '04년 텍사스 발생 이후 10년만인 '14.12.18일 오레건 주에서 최초 발생하여 '15.5.12일까지 20개 주에서 216건 발생
 - 철새이동경로(Pacific·Central·Mississippi flyway)상 20개 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H5N2, H5N8 및 신종 H5N1형 AI 발생('14.12월~)
 - * 농장 : H5N2 14개 주 152건(칠면조111, 닭28, 혼합13), H5N8 3개 주 4건(칠면조1, 닭1, 혼합2)
 - 야생오리, 고방오리, 큰매 등 미국내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는 '15.5.12일까지 총 60건 발생(H5N8 20건, H5N2 37건, H5N1 3건)
 - 15개 주에서 가금 3천2백만수를 살처분·매

물하였으며, 위스콘신(4.20), 미네소타(4.23)에 이어 아이오와가 3번째로 비상사태 선언(5.1)

▣ (발생 원인) 가을철 철새 이동시기에 유입되어 서식환경 또는 야생 조류에서 존속하던 바이러스가 경로별(flyway) 야생조류에 의해 전파 추정

○ 농무부 농업연구청(ARS) 조사결과에 따르면 닭 보다는 칠면조가 감수성이 조금 더 높고, 야생 오리에서 전파력이 높음

* 주로 철새이동경로(Pacific 및 Mississippi Flyways)에 따라 발생

▣ (방역 정책) 가축살처분(기본 정책방향), 상시 예찰(출하전 검사), 야생철새 예찰강화, 발생시 대응(이동제한·살처분·폐기) 보상 등

○ 발생농장 주변 4개 지역 구분 및 발생농장 소독 완료 후 최소 28일 후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

* 감염지역(반경3km), 완충지역(3~7km), 관리지역(감염+완충지역), 예찰지역(관리지역 외곽으로 최소 반경 10km)으로 구분

【방역인력 동원 : 살처분 및 동통제(비상사태 선포시 등)】

① 긴급대응은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며, 대응 필요 수준에 따라 농무부에서도 참여

② 농무부 동식물검역청(USDA-APHIS)의 APHIS Mobilization Guide에 따라 주요 농업재해나 농업테러에 대응하여 여러 기관을 포함하는 대응반(MAC, Multiagency coordination)이 구성되어 긴급대응

③ 특히, 현장대응 시 APHIS의 가축질병긴급대응군(NAHERC, National Animal Health Emergency Response Corps)이 현장방역 지원

- APHIS가 운영하며, 유사시 수의사, 가축방역 테크니션을 APHIS 임시직으로 채용

- 자발적 신청에 따라 채용하며, 임시직으로 채용시 짧게는 3~4주에서 길게는 더 장기간 활동하며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음